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률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을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,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목, 사업자의 명칭·소재지·대표자 성명, 구체적 위반행위, 징역의 기간·벌금액, 처분내용·기간, 처분일 공표(안 제27조의2제1항)
- 나.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(안 제27조의2제2항)
- 다. 환경부 및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누리집에 1년간 게재(안 제27조의2제3항)
- 라. 시·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로 제출(안 제27조의2제4항)
- 마.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(안 제27조의2제5항)
- 바. 제출된 자료의 접수 업무 위탁(안 제29조제1항제3호)
- 사.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(안 별표4제6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15. ~ 12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위반사실 공표)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
2. 사업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.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,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, 배출자인지 구분하여야 한다.
3. 위반행위(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)
4. 징역의 기간, 벌금액, 행정처분의 내용, 처분일, 기간 및 과징금·과태료 부과액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는 1년간 환경부 및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

별표 4 중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	매출액의	매출액의	매출액의
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	2/100	3/100	5/100
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			
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			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